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전력변환장치 모델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직류전압 ○ 정격용량
------------------	-----------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19-3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
년 10월 1일 이후,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제351호,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3) 및 별표 4 제1호타목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1천볼트를 초과하는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거나 정격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51호, 2019. 10. 21)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리튬이차단전지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타목1)·3) 및 별표 4 제1호타목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이하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 (안)										
[별표 1] <u>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u>(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table><tr><td rowspan="2">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td><td>1) 전력변환장치</td><td>○ 핵심 부품의 종류</td></tr><tr><td>(생략)</td><td>(생략)</td></tr></table>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핵심 부품의 종류	(생략)	(생략)	[별표 1] <u>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u>(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table><tr><td rowspan="2">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td><td>1) 전력변환장치</td><td>○ 직류전압 ○ 정격용량</td></tr><tr><td>(생략)</td><td>(생략)</td></tr></table>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직류전압 ○ 정격용량	(생략)	(생략)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핵심 부품의 종류								
	(생략)	(생략)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	○ 직류전압 ○ 정격용량									
	(생략)	(생략)									